

운영규정

-중 제12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

언약정원
재가복지센터

제12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1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가. 대상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나.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다.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- 라.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

2. 계약기간

- 가.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
- 나.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급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,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
- 다.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1)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 - 2)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.
 - 3)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 - 4)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 - 5) 매월 근무현황표(급여제공계획서)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.

3. 월 이용료

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%를 본인부담으로 한다. (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.0% / 9.0%를 본인부담으로 한다. 이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.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.

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5년)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940	150분 이상	49,160
60분 이상	24,580	180분 이상	55,350
90분 이상	33,120	210분 이상	61,670
120분 이상	42,160	240분 이상	68,03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5년)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6,48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7,9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8,690

※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4.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(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)
- 나.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“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”과 같다. 상기 자(이하 “갑”, “을”이라 한다)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, 각 1통씩 보관한다.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권리	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
의무	①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 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③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 (해외 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)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6. 준수사항

- 가. 이용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- 나.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.
- 다.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.
- 라.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.

7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가.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
- 나.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- 다.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라.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
- 마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바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
- 사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